

##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국내 기술이전 계약 및 중재조항 명기에 관한 연구\*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Domestic Technology Transfer Contracts  
of Public R&D Institutes in Korea

심 상 렐\*\*

Sang-Ryul Shim

### 〈목 차〉

- I. 서 론
- II. 기술이전의 개념과 기술이전 계약 절차
- III.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현황
- IV. 중재조항 명기 현황 및 개선방안
- V. 요약 및 결론

주제어 : 국내 기술이전, 라이선스계약, 분쟁해결, 중재조항

\* 본 논문은 광운대학교 2009년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광운대학교 동북아대학 부교수 (srshim@kw.ac.kr)

## I. 서 론

지식과 정보가 사회변화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technology)<sup>1)</sup>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세계 각국은 핵심기술의 보유, 신기술의 개발, 획득 및 활용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각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이른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및 원천 기술들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응용 및 산업기술들을 개발해 가고 있다.

또한 기술정책의 초점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위주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경제적 성과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등 공공연구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미 개발된 기술의 잠재적 사업기회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거나 사업적 가치가 없는 지적재산권의 양산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기술거래<sup>2)</sup> 시장이 나타나고, 기술이전을 위한 전담조직<sup>3)</sup>이 운영되는 등 기술사업화<sup>4)</sup>가 큰 화두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들은 기초기술 연구에 초점을 둘으로써 기술 사업화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 대학들을 중심으로 기술 이전과 기술창업이 증가하면서, 대학 내의 기술 라이선싱(Technology Licensing)이나 기술 창업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통해 기술사업화에 성공적인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다.<sup>5)</sup>

- 1) 기술(technology)은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 용역 제공,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화된 지식 및 정보”를 의미한다(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을 포함한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제2조, 2000년 1월 제정). 이렇게 정의되는 기술은 기계, 공정, 발명, 그리고 인간에 체화되어 있는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기능(skill)도 포함한다.
- 2) 현재 기술이전과 기술거래라는 용어는 혼용되고 있다. 기술이전은 기술의 흐름, 기술거래는 기술의 거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기술이전, 실무적으로는 기술거래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영어로는 ‘technology transfer’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대학, 연구소 등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민간 이전과 사업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관련 법률(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에서 사용된 법적 용어라는 점에서 기술거래보다 기술이전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제11조에서는 대학, 연구소 등의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 전담조직( Technology Licensing Office : TLO)의 설치 및 전담인력 1인 이상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4)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에서는 사업화를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사업화는 기술혁신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과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사업화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기술사업화는 “개발된 무형의 기술을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하는 것”이며, 광의의 기술사업화는 “기술의 비즈니스화, 즉 기술을 통하여 경제이익을 얻는 모든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지식경제부·한국기술거래소, 「2008년판 기술이전·사업화 백서」, 2009.4, pp.4-5.
- 5) 박상문, “대학 및 공공연구소 관점에서 본 기술사업화 추진전략”, 「기술사업화」 웹진, 2009 Spring (Vol.9).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공공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한국기술거래소(KTTC) 등 관련 6개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2009년 5월 출범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orea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 KIAT)<sup>6)</sup>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항목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설정함으로써 대학 연구자들로 하여금 자의반 타의반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 결과 국내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의 특히 등록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 해외특허등록은 213건, 국내 특허출원은 4,052건으로 전년대비 16.4%, 36.3% 증가하였다.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951건, 기술이전 수입료는 16,41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8.9%와 81.7%로 매년 두자리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소들도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기술사업에 대해 무관심하였던 공공 연구기관들이 기술이전·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팔목할 만한 변화이자 큰 성과 향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7)</sup>

현재 이러한 기술이전·사업화는 대부분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국내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연구, 특히 기술이전에 따른 제반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명기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1) 기술이전의 개념, 유형, 특징은 무엇인지, (2) 국내 기술이전의 현황은 어떠한지, (3) 중재조항 명기 관점에서 국내 기술이전 계약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4)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http://zine.ck21.or.kr/home/contents.asp?mu=97&mcate=&scate=55&bcate=33>).

6)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 따라 산업기술 분야 6개 기관(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통합되어 2009년 5월 4일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이다. 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 분석, 산업기술기반조성,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7) 한국기술거래소, 「2007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2008.

## II. 기술이전의 개념과 기술이전 계약 절차

### 1. 기술이전의 개념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은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은 “선발기업(국가)이 개발해 놓은 기술을 후발기업(국가)이 유상 또는 무상의 방법으로 채택, 흡수하여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제품의 효율적 생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up>8)</sup>

우리나라의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에서는 기술이전을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모든 경제적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기술이전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협의의 기술이전은 개발된 무형의 기술을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하기 위한 라이선스 등을 통한 기술의 매매를 의미한다.<sup>9)</sup>

따라서 이를 정의를 종합해 보면, 기술이전이란 “무형재인 기술과 지식 요소를 외부로부터 부분 또는 전체를 도입하여 유형재인 제품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기술이전 당사자가 계약을 하거나 협상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도상의 공식행위”로 요약된다.<sup>10)</sup>

이러한 기술이전은 형태가 있고, 눈으로 확인하거나 만질 수 있으며,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모되거나 소멸되는 일반적인 물리적 상품의 거래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표 1> 참조).

〈표 1〉 기술이전의 특징

구 분	내 용
도입기술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 부족	특히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기술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도입기술에 대해 충분한 사전 지식과 정보의 부족은 불평등한 계약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적정 기술의 검색 및 선정 능력 부족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며, 누가 갖고 있으며,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를 잘 모를 경우 불필요한 기술의 도입과 함께 그 활용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기술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	기술공급자의 전략이 무엇인지, 다른 기업들과 어떻게 기술 거래를 해왔는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불리한 협상의 요인이 된다.

8) 김정홍, 「기술혁신의 경제학 제2판」, 시그마프레스, 2003., p.246.

9) 이창주, “기업간 기술이전 활성화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사업화」 웹진, 2008 Autumn(Vol.7). (<http://zine.ck21.or.kr/home/contents.asp?mu=1&mcate=6&scate=81&bcate=25>).

10) 지식경제부·한국기술거래소, 「2008년 기술이전·사업화 백서」, 2009.4, pp.4-6.

협상절차가 복잡하고 계약내용 난해	무형재인 기술은 가치의 검증 및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문제 발생 시 그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
기술도입 조직 내부의 거부감	신기술의 도입은 기존 기술을 보유한 구성원에게 부담 내지 위협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도입 기술의 활용을 기피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수요자의 수용 능력이 매우 중요	상대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기술수요자는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해 도입된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기술공급자와 기술 수요자간에 불신 존재	기술은 상대방에게 이전되면 원상회복이 안 되고, 기술의 축적은 새로운 신기술 개발이나 모방을 쉽게 하기 때문에 성실한 계약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존재한다.

자료 : 심상렬, “국제기술이전 거래에서의 계약이행과 상사분쟁 예방”,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2008.12,

한편 기술이전은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 간에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합치될 때 일어난다. 그리고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도입목적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게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술이전의 범위와 위험부담 등을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 경영자원 동반, 인수 합병(M&A), 기술 자문 및 지도 연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기술이전의 범위 및 위험부담에 따른 분류

구 분	내 용
기술의 매매 방식	기술의 양도, 양수 방식으로서 계약에 의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
라이선스 방식	기술의 소유권은 유보한 채 당해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형태
기술 관련 경영자원과 함께 이전·거래 방식	기술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기술을 사업화하여 성공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고, 실제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기술에 대한 자체 소화 흡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여전히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게 됨
기술력 보유 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기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술 자체 또는 관련 경영자원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팔거나 사는 것도 기술거래의 한 형태
기술 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 방식	기술에 따라서는 기술 제공자의 협력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기술 제공자 측의 기술자가 기술거래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음

자료 : 이재일, “21C 기술의 사업화 전략”, 「기술사업화」 웹진, 2007.3.

## 2. 기술이전 계약의 일반적 절차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사업화는 (1) 연구성과 중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선별하는 기술평가, (2) 기술을 숙성시키고 시장화를 위한 기술금융, (3)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화, 합작투자, 라이선싱을 추진하는 기술마케팅의 과정 등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다시 말해 기술시장이 형성되어 기술의 매매 및 거래, M&A, 합작투자 등이 활발히 일어나야 하고, 시장에 못 미친 미성숙 기술들은 인큐베이팅을 거치도록 해야 하며, 리스크가 큰 사업에 투자할 모험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술이전에 따른 위험과 수익은 기술이전 방식에 따라 다르다. 즉 기술수요자에게 기술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하는 기술양도(assignment)가 가장 위험이 낮고, 공동연구(cooperative research), 라이선싱(licensing), 합작벤처(joint venture), 인수합병(M&A)의 순으로 위험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기업 설립을 통해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분사(spin-off) 방식이 가장 위험도가 높다. 반면 기술이전 성공을 통한, 즉 성공적 사업화를 통한 수익은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다.<sup>12)</sup>

따라서 기술이전 당사자인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사적(당사자) 자치의 원칙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적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약의 체결, 계약 내용의 결정, 상대방 선택, 계약 방식 등을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기술이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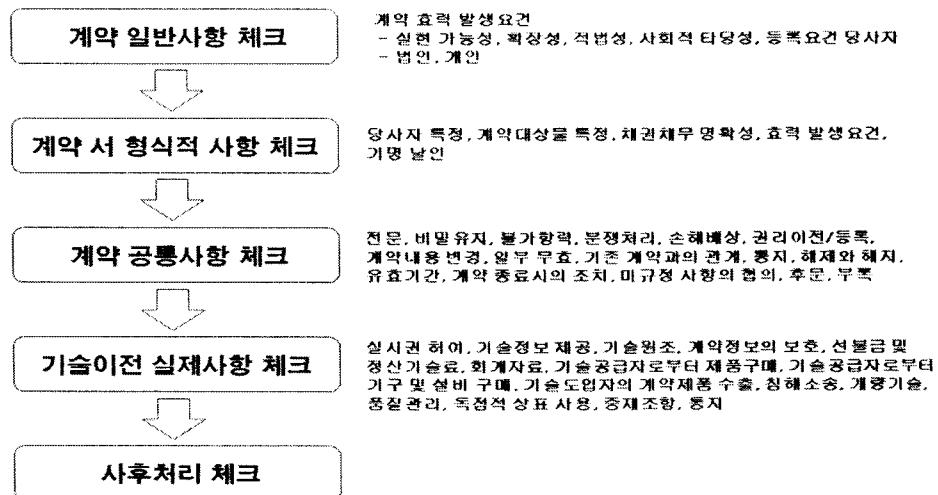
이때 기술이전 당사자는 [그림 1] 및 <표 3>에서와 같이 계약의 일반적 사항, 계약서의 형식적 사항, 계약의 공통사항, 기술이전 실체사항 및 사후처리 조항들을 순차적으로 주의 깊게 체크하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sup>13)</sup>

11) 김선근, "기술사업화의 국가적 필수요소를 먼저 갖추자", 「기술사업화」 웹진, 2009 Autumn (Vol.11). (<http://zine.ck21.or.kr/home/contents.asp?mu=1&mcate=6&scate=382&bcate=40>)

12) 임채윤·이윤준, "기술이전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2

13) 이러한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기술거래소(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2007년에 '기술이전 전담 조직의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웹사이트([www.ck21.or.kr](http://www.ck21.or.kr))를 통해 대학, 연구소 등 기술이전 관련 공공연구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기술이전 계약 관련 주요 사항 체크 절차도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전담조직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2007. p.262.

(표 3) 기술이전 계약 체결 관련 세부항목 체크 리스트

구 분	점검 포인트
계약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술의 개요</li> <li>- 기술의 가치</li> <li>- 기술이전의 유형(양도, 실시, 지도 등)</li> <li>- 관리 구분에 따른 이전방법</li> </ul>
계약 상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개인의 구분</li> <li>- 권리능력, 행위능력의 유무</li> <li>- 계약 상대방 중 조건 협상의 주요 담당자</li> <li>- 추가 기술개발의 능력</li> <li>- 대가 지급을 위한 재정 능력</li> </ul>
계약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이전의 대가 지불방법, 지급처</li> <li>- 기술이전을 위한 지도방법</li> <li>- 성과의 귀속(개량발명의 범위, 보고), 권리의 지분</li> <li>- 기술이전의 대가(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등)</li> <li>- 출원, 등록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li> <li>- 각종 보고, 통지의 시기 및 방법</li> <li>- 계약 유효기간, 계약의 변경, 해지, 종료</li> <li>-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의 목적</li> <li>- 계약의 배경, 계약 경위</li> <li>- 기술개발자의 의도</li> <li>- 다른 법률과의 저촉</li> <li>- 비밀의 유지, 정보의 반환</li> <li>- 정보의 상호 교환</li> </ul>

자료 : 상 동. p.350.

### III.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현황

#### 1.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정책

우리나라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및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 TLO)의 업무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서는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과제 관리를 제외하고, 대학 연구자들에게 연구 기회를 위한 자료 제공부터 기술의 발굴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나아가 산학협력 선순환 구조 확립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4)</sup>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기 언급한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관련 법률에 따라 연구소와 대학 등의 공공연구기관에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TLO는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한 중요 혁신주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취지와 당초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15)</sup>

한편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듯 지식경제부의 기술거래사,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사, 한국기업평가원의 기업가치평가사, 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의 기업기술가치평가사 등이 대표적이다.

<표 4> 기술거래·평가 관련 자격제도를 통한 인력배출 현황(2008년)

구 분	주관기관	인력(명)
기술거래사	지식경제부	692
기술 기업 평가	기업기술가치평가사	748
	기업가치평가사	400(추정)
	기술평가사	765

자료 : 국제e-비즈니스학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중장기(2009-11년) 정책 비전 연구」, 2008.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제5항에서는 ①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② 특히 등의 출원·등록·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 ③ 기술이전 및 활용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④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⑤ 산업체의 연구 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15) 허운행, “국가R&D 성과 확산을 위한 TLO사업 확대 필요성”, 「기술사업화」 웹진, 2009 Autumn(Vol.11).

## 2. 공공연구기관의 국내 기술이전 현황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08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 5>에서 보듯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 제2조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공공 연구기관에 포함된 조사대상 273개 기관 중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기관은 137개 기관으로 50.2%를 차지하였다.

공공연구소에서 기술이전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총 52개로 조사대상 기관의 41.9%를 차지하였다. 대학들 중에서 기술이전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총 85개로 조사대상 기관의 47.9%로 공공연구소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보유·이전 현황

구분	조사대상 기관	응답 기관	기술 보유기관	이전실적 경험기관
공공 연구소 (개)	국공립시험연구기관	57	55	33
	정부출연연구기관	20	20	20
	특정연구기관	11	11	7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	15	12
	비영리 법인 및 단체	20	19	14
	소계	124	120	86
대학 (개)	국공립대학	28	28	27
	사립대학	121	112	88
	소계	149	140	114
합계(개)		273	260	201
				137

자료 : 지식경제부, 「2008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 조사 결과」, 2009.7.

2008년까지 공공연구소의 누적보유기술 대비 기술이전 비율은 30.3%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 당해 연도의 기술이전율은 29.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공연구소보다 조사대상이 많은 대학의 경우 2008년까지 누적보유기술 대비 기술이전 비율은 15.2%로 공공연구소의 절반에 불과하며, 2008년 당해 연도의 기술이전율도 16.2%로 공공연구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참조).

〈표 6〉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

	기술보유 현황(건)		기술이전 현황(건)		기술이전율(%)	
	누적	2008년	누적	2008년	누적	2008년
전체	66,720	14,470	15,703	3,213	23.5	22.2
공공연구소	36,837	6,466	11,151	1,919	30.3	29.7
대학	29,883	8,004	4,552	1,293	15.2	16.2

자료 : 상동

이러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2007년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여 2008년도에는 1,288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 공공연구소의 기술료 수입은 1,023억원, 대학은 265억원으로서 공공연구소의 수입이 전체의 7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

구분	2005	2006	2007	2008	최근 3년 평균증가율(%)
전체	68,730	82,030	104,413	128,786	23.3
공공연구소	61,853	74,027	89,342	102,320	18.3
대학	6,878	8,002	15,071	26,466	60.0

자료 : 상동

### 3. 공공연구기관의 국내 기술이전 계약 현황

국내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국내 기술이전의 각 유형별 계약체결 건수를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듯 전체 공공연구기관 281개 기관 중 18.1%인 51개 기관이 기술이전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총 151개 중 25.2%인 38개 대학이 기술매매 체결사례가 있다. 이에 반해 공공연구소는 130개 중 10%인 13개 기관만이 기술매매 체결사례가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 총건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연구소가 416건으로 대학의 171건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공공연구소의 기술매매의 경우 총 416건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다수인 35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관당 평균 기술매매건수도 출연(연)이 17.6건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타 기관들의 평균건수는 1건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평균 1.2건으로 높았고 국공립시험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은 0.6건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8〉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매매 계약체결 건수(2007년)

기관 유형	사례수 (개)	총건수 (건)	평균건수(%)	
			모집단	보유
기관 전체	51	587	2.1	11.5
(1) 공공연구소	13	416	3.2	31.0
국공립시험연구기관	2	38	0.6	19.0
정부출연연구기관	5	352	17.6	70.4
특정연구기관	2	7	0.6	3.5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19	1.2	4.8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	-	-
(2) 대학	38	171	1.1	4.5
국공립대학	12	46	1.6	3.8
사립대학	26	125	1.0	4.8

자료 : 한국기술거래소, 「2007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2008.

유상기술실시 계약체결에서도 공공연구소의 계약체결 경험이 있는 기관은 대학의 49개보다 적은 39개이나, 계약체결건수에서는 1,685건으로 대학의 675건보다 2.4배가 높게 나타났다. 공공연구소의 전체 유상기술실시 계약체결 1,010건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이 74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시험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순이다(〈표 9〉 참조).

〈표 9〉 유상 기술실시 계약체결 건수(2007년)

기관 유형	사례수 (개)	총건수 (건)	평균건수(%)	
			모집단	보유
기관 전체	88	1,685	6.0	19.1
(1) 공공연구소	39	1,010	7.8	25.9
국공립시험연구기관	16	170	2.8	10.6
정부출연연구기관	18	749	37.5	41.6
특정연구기관	3	49	4.5	16.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	25	1.6	25.0
비영리 법인 및 단체	1	17	0.8	17.0
(2) 대학	49	675	4.5	13.8
국공립대학	18	267	9.2	14.8
사립대학	31	408	3.3	13.2

자료 : 상 동

OEM 및 기술제휴 등 기타 유형의 계약체결은 총 22개 기관이 146건을 이루었으며, 이 중 공공연구소 12개 기관이 103건으로 대학의 10개 기관, 43건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공공연구소의 103건의 OEM 및 기술제휴에서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이 6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1건, 정부출연연구기관 13건순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표 10> OEM, 기술제휴 등 기타 계약체결 건수(2007년)

기관 유형	사례수 (개)	총건수 (건)	평균건수(%)	
			모집단	보유
기관 전체	22	146	0.5	6.6
(1) 공공연구소	12	103	0.8	8.6
국공립시험연구기관	5	69	1.1	13.8
정부출연연구기관	4	13	0.7	3.3
특정연구기관	-	-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21	1.3	7.0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	-	-
(2) 대학	10	43	0.3	4.3
국공립대학	5	27	0.9	5.4
사립대학	5	16	0.1	3.2

자료 : 상동

한편 대학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주체별 현황을 분석하면, 2007년도에도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58.5%로 가장 높지만 2006년 대비 4.9%가 감소한 반면 벤처중소기업으로 이전된 건수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기업과 해외로 이전된 기술건수는 감소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이전비중이 90%로 편중되어 있다(<표 11> 참조).

<표 11> 주체별 대학 기술이전 계약체결 현황

구분	대기업	벤처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기타 (개인, 타 대학, 연구소 등)	해외	합계
2007년 (건,%)	44 (4.6)	300 (31.5)	556 (58.5)	42 (4.4)	9 (0.9)	951 (100)
2006년 (건,%)	44 (8.1)	127 (23.3)	345 (63.4)	16 (2.9)	12 (2.2)	544 (100)

자료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년 대학산학협력백서」, 2008.

## IV. 중재조항 명기 현황 및 개선방안

###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중재조항 명기 예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이전의 유형과 세부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 간의 기술이전 계약도 당사자들의 계약 목적과 구체적인 기술이전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그것은 기술의 매매, 양도 및 실시허락 등의 좁은 의미로 기술이전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상호 협력 및 기술의 교환, 기술을 담보로 한 자금의 조달, 기술의 지도 및 지원, 기술용역의 제공 등도 넓은 의미의 기술이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이전 계약의 관점에서 볼 때 기술 창출형 계약(공동 연구 등), 기술 양도형 계약(특허권 양도 등), 기술 대여형 계약(라이선스 등), 기술 제공형 계약(노무, 서비스 등) 등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6)</sup>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담당자들의 기술이전 계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007년 '기술이전 전담조직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중 업무매뉴얼에서는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 실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공공연구기관과 기업들간의 기술이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인 기술 대여형 계약 중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의 표제, 계약의 전문, 계약의 본문, 계약의 후문 등으로 나누어 해당 주요 조항에 대해 예시와 함께 상세한 해설을 하고 있다.

그 중 계약의 본문 부분에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 방법으로 중재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표 13>에서 보듯 '중재조항' 예시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라이선스 계약의 제반 조건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의견의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분쟁의 해결 절차나 원칙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분쟁 방법으로서 소송에 의한 사법적 해결보다는 중재가 상업적 거래에서 중재가 선호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기술정보 등과 같은 미비사항을 두고서 다투는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중재의 유효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전담조직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2007. pp.280-283.

〈표 13〉 기술이전 전담조직 업무매뉴얼 중재조항 예시

구 분	내 용
국문 중재조항 [예시 13-24]	제19조(중재)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영문 중재조항 [예시 13-57]	Article 10 (Arbitration)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①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or ② any breach thereof which cannot be amicably settled between the parties hereto,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The arbitration shall take place in Seoul, before three(3) arbitrators in accordance with ③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④ then in effect. The proceedings shall be conducted in English. ⑤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전담조직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2007.

또한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중재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에 중재조항을 두어 사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중재의 장소, 중재기관, 중재규칙 또는 적용 법규 등 중재의 3요소는 물론 최종 해결과 구속성의 표시, 중재인의 수와 사용언어 등 기타 요소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다른 항목은 양보하더라도 중재의 장소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곳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전 전담조직 업무매뉴얼에서의 중재 제도 활용과 관련한 상세한 중재조항 설명 및 예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관련 표준계약서의 경우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영문 표준계약서에서는 중재조항만을 명기<sup>17)</sup>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국문 표준계약서에서는 중재보다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조항을 먼저 제시<sup>18)</sup>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서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도 있음을 약식 문언<sup>19)</sup>과 함께 설명하고

17) 'Patent License Agreement'의 경우를 보면, Article 20 (Arbitration) "Any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18)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계약서'를 들 수 있다. 즉 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쟁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의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읍은 이를 상호 협의 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의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_\_\_\_\_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와 같이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먼저 권고하고 있다.

19) 대부분의 국문 표준계약서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관련 조항을 먼저 제시한 뒤에 다음과 같이 중재에 의

있다. 심지어 '기술거래 중개 계약서' 등 일부 국문 표준계약서에서는 아예 분쟁해결에 대한 관련 조항을 생략하고 있다.

또한 중재조항만을 명기한 영문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도 일부 표준계약서는 복수의 중재 기관을 명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중재기관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기술이전 계약 당사자 간에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sup>20)</sup>

## 2. 기술이전 중개기관의 중재조항 명기 현황

현재 국내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에 의해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기관 내에 설치된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TLO 설치 대상인 공공연구기관 273개 중 150개(55%)만이 TLO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TLO가 설치된 경우에도 근무인력의 순환보직제도, 전문가 미확보, 타 업무 겸직 등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내부역량이 미흡하다. 또한 연구기관 내부에서 연구실무 그룹을 리드하며 주도적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하기에는 조직규모, 권한, 역할 등의 위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sup>21)</sup>

이런 이유로 최근 3년간 공공연구기관 전체의 평균 기술보유건수의 증가율은 34.6%이나, 기술이전 증가율은 27.4%에 그치고 있으며, 기술 보유기관 201개 중 137개 기관만이 기술이전 실적을 갖고 있다. 2008년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예산은 778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10조 8,423억원)의 약 0.72% 수준에 불과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인 TLO에 배정되는 예산지원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은 해당 기관의 TLO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이전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기술이전 중개기관들은 먼저 기술보유자인 대학, 연구소 등 국내 공공연구기관과 기술거래 중개 계약서를 체결하고, 기술

한 분쟁해결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분쟁해결의 또 다른 방법으로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합의할 수도 있음. 중재결정의 과정이 비공개인 장점이 있어서 비밀을 요하는 기술 관련 계약의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적당함. (예문 : "본 계약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둘 중재원의 중재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중재의 의하여 처리한다.")

20) 'License Agreement'의 경우가 이러한 오류의 대표적인 예이다. Article 22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hereto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shall be resolved promptly and amicably by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hereto. If any such disputes has not been resolved amicably by the parties hereto within three(3) months after a formal notice of disputes is given by one party hereto to the other party hereto, either party hereto may demand an arbitration of the dispute pursuant to the Agreement b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the disputes shall be finally settled by the such arbitration. The arbitration shall take place in Seoul, Korea or in Tokyo, Japan pursuant to the Agreement. The award of arbitrat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hereto."

21) 허운행, "국가R&D 성과 확산을 위한 TLO사업 확대 필요성", 「기술사업화」 웹진, 2009 Autumn(Vol.11).

수요자인 국내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마케팅, 협상 및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패키징 발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전문 기술이전 중개기관의 경우,<sup>22)</sup> 기술이전 중개의 첫 번째 단계인 기술보유자와의 '기술거래 중개 계약서'에 비밀유지,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면책 등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분쟁 해결과 관련한 명시적 조항(특히 중재조항)이 없다.

또 다른 전문 기술이전 중개기관의 경우<sup>23)</sup> 기술보유자와의 '기술거래 중개 위임 계약서'에 분쟁 해결과 관련한 명시적 조항이 들어 있지만, 중재에 의한 해결보다는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고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 기술이전 중개자의 노력에 의해 기술보유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실제로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일부 사례의 경우<sup>24)</sup>에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해결과 관련한 명시적 조항(특히 중재조항)이 없다.

### 3. 중재조항 명기 개선 방안

이러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 전담기관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불일치 및 전문 기술이전 중개기관에서의 미흡한 중재조항 활용은 원활한 기술이전 계약의 이행 및 당사자 간의 신뢰 구축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에서의 중재조항 명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방안의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 관련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술이전 전담조직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등의 중재 조항 관련 불일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실무자는 물론 이들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수요자들의 중간에서 기술이전을 중개해 주는 전문 기술이전 중개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중재조항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은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관련한 분쟁 발생건수, 분쟁 유형,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기술이전

22) (주)테크란, '기술패키징 발굴 지원사업 보고서(중간보고서)', 2009.10.

23) (주)피에스엠비, '기술패키징 발굴 지원사업 보고서(중간보고서)', 2009.10.

24) (주)티티엠시스, '기술패키징 발굴 지원사업 보고서(중간보고서)', 2009.10.

계약 관련 당사자들이 보다 합리적, 효율적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V. 요약 및 결론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기술정책의 초점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위주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경제적 성과 위주로 변화되면서 기술이전·사업화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특히 등록건수, 기술이전 계약건수와 기술이전료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전·사업화의 대부분이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 기업에게 이전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의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기술이전 전담조직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제시를 통해 관련 당사자간의 원활한 기술이전·사업화를 돋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에 따른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제반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방법과 관련하여 기술이전 전담조직 업무매뉴얼에서는 중재 활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표준계약서의 경우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영문 표준계약서에서는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만을 명기한 데 반해 대부분의 국문 표준계약서에서는 중재보다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조항을 먼저 제시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서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도 있음을 약식 문언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기술거래 중개 계약서' 등 일부 국문 표준계약서에서는 아예 분쟁해결에 대한 관련 조항을 생략하고 있다.

또한 중재조항만을 명기한 영문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도 일부 표준계약서는 복수의 중재 기관을 명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중재기관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기술이전 계약 당사자 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 대한중재인협회 등 중재 관련 단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대학, 연구소 등 기술이전 전담조직

(TLO), 전문 기술이전 중개기관, 기술수요자인 민간 기업 등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중재조항의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및 컨설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선근, "기술사업화의 국가적 필수요소를 먼저 갖추자", 「기술사업화」 웹진, 2009 Autumn (Vol.11).
- 김정홍, 「기술혁신의 경제학 제2판」, 시그마프레스, 2003.
- 박상문, "대학 및 공공연구소 관점에서 본 기술사업화 추진전략", 「기술사업화」 웹진, 2009 Spring (Vol.9).
- 박종복, "기술사업화 이론과 기술경영 적용방안 : 졸리(Jolly)의 이론을 중심으로", 「KIET 산업경제」, 2008.2, pp.26-37.
- 서상연, "기술이전 계약 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기술사업화」 웹진, 2007 Autumn (Vol.3).
- 심상렬, "국제기술이전 거래에서의 계약이행과 상사분쟁 예방",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2008.12, pp.71-89.
- 이재일, "21세기 기술사업화 전략", 「기술사업화」 웹진, 2007 Spring (Vol.1).
- 최치호, "특허라이선스 계약, 제대로 알기", 「기술사업화」 웹진, 2007 Autumn (Vol.3).
- 국제e-비즈니스학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중장기(2009-11년) 정책 비전 연구」, 2008.
- (주)테크란, '기술패키징 발굴 지원사업 보고서(중간보고서)', 2009.10.
- (주)티티엠시스, '기술패키징 발굴 지원사업 보고서(중간보고서)', 2009.10.
- (주)피에스엠비, '기술패키징 발굴 지원사업 보고서(중간보고서)', 2009.10.
- 지식경제부, 「2008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 조사 결과」, 2009.7.
- \_\_\_\_\_ · 한국기술거래소, 「2008년 기술이전·사업화 백서」, 2009.4.
- 한국기술거래소, 「2007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200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전담조직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2007.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년 대학산학협력 백서」, 2008.
- 허재관, 「기술라이선스 실무 매뉴얼」, R&D Books, 2003.5.
- 황태형, "이론으로 본 기술이전의 특징 및 효과", 산업기술시장 이슈리포트 2008-07, 한국 기술거래소, 2008.5. =255&bcate=2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www.kiat.or.kr/>
-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Connect Korea) <http://www.ck21.or.kr/>

## ABSTRACT

###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Domestic Technology Transfer Contracts of Public R&D Institutes in Korea

Sang-Ryul Shim

In this rapidly changing knowledge-based society, technology is regarded as one of critical factors for competitive edge and sustainable growth. Therefore, most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strengthened their efforts to promot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KIAT(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newly established in May 2009 as a quasi-government institute with the integration of six organizations including KTTC(Korea Technology Transfer Center)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transferring and commercializing industrial technolog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Generally,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ave been conducted by the contracts which are very detailed, complex and diverse. To solv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it is essential to make a prior agreement on the amicable settlement by the use of Arbitration Clause.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process, current situation and model contracts of domestic technology transfer in Korea, it is quite recommend for arbitration-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KCAB(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o foster the strong campaign for the popular use of Arbitration Clause. It will contribute to settl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more speedy, economically and rationally, thereby promoting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Korea.

**Key Words :** Industrial Technologies,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 Disputes,  
Arbitration Clause, Model Contracts